

2025. 4. 24.

제2차 임시이사회

부 의 안 건



충남연구원
ChungNam Institute

부 의 안 건

① 보고 안건

제1항 전차 이사회 조치결과 보고1

② 심의 안건

제2항 이사 및 감사 선임(안)5

의사일정 제1항

전차 이사회 조치결과 보고



전차 이사회 조치결과 보고

1 주요안건 처리결과

- 개최명 :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
- 의결일자 : 2025. 3. 26.(수)
- 의결방식 : 방문 서면결의

| 안 건 | 처리결과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전차 이사회 조치결과 보고 | ○ 보고 청취 |
| 2024년 사업실적 보고 | ○ 보고 청취 |
| 2024년 결산(안) | ○ 원안 의결 |

의사일정 제2항

이사 및 감사 선임(안)



이사 및 감사 선임(안)

1] 선임대상 이사 및 감사

① 선임직 이사 7명

- 선임 근거 : 충남연구원 정관 제14조 제1항
- 임 기 : 3년(2025. 5. 1. ~ 2028. 4. 30.)
- 선임 절차 : 원장 추천 ⇨ 이사회 의결 ⇨ 도지사 임명

② 선임직 감사 1명

- 선임 근거 : 충남연구원 정관 제18조 제1항
- 임 기 : 3년(2025. 5. 1. ~ 2028. 4. 30.)
- 선임 절차 : 원장 추천 ⇨ 이사회 의결 ⇨ 이사장 임명

2] 제안 이유

- 선임직 이사 12명 및 감사 1명의 임기만료('25.4.13.)에 따라
신임 이사진 구성 필요

※ 임기 : 3년,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지만 해당 13인 모두 旣연임

③ 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(안)

- 연구원 정관 제28조 제4호에 따라 선임직 이사 7명 및 감사 1명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함

④ 임원 선임 관계 법령

-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6조(임원 등)

-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-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선임)

-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(이하 “당연직이사”라 한다)과 원장이 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이사장·원장·이사(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)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-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이사의 추천)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계·경제계·언론계·법조계·연구원 등에 종사하며,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
2.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3.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,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○ 충남연구원 정관

13조(임원)

- ①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1. 이사장 1인
 2. 이사 25인 이내(이사장 및 원장 포함)
 3. 감사 2인
 4. 원장 1인
- 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하되, 원장은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선임직 이사, 당연직 이사, 노동자 이사로 구분한다.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취임승낙한 때부터 당연직이사가 된다.
 1.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(도지사, 도내 시장·군수 각 1인)
 2. 원장

제15조(이사의 임기)

-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제14조제1항의 그 직을 면할 때 종료되며,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.
-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전항의 이사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선임직 이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8조(감사)

- ①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각 1인씩을 두며, 선임직 감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, 당연직 감사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
- ② 선임직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8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·의결한다.

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[별표1] 비상근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

- ①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기관·단체·대학 등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
- ② 지방행정 연구 활동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
- ④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,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, 해당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

【별첨】 임명 대상 선임직 이사 및 감사 명단

| 구 분 | 성 명 | 소 속 | 직 위 | 약 력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이 사 | 강 준 모 | 호서대학교 | 글로벌 부총장 | - 現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- 前 호서대 대외협력부총장 - 前 호서대 행정부총장 |
| " | 김 용 하 | 순천향대학교 | 교 수 | - 現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- 前 순천향대학교 부총장 - 前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 |
| " | 윤 주 경 | FITI시험연구원 | 원 장 | - 現 FITI시험연구원장 - 前 국회의원(비례대표/국민의힘) - 前 제10대 독립기념관장 |
| " | 장 영 달 | 장영달 법률사무소 | 대 표 | - 前 대전지법 흥성지원 판사 - 前 대전지법 판사 - 前 창원지법 판사 |
| " | 조 경 업 | 前한국경제연구원 | 박 사 | - 前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- 前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-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|
| " | 최 강 식 | 연세대학교 | 교 수 | - 現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- 前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장 - 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|
| " | 한 권 희 | 백석대학교 | 교 수 | - 現 JB벤처스 부회장 - 前 중부도시가스 대표이사 - 前 SK텔레콤 부사장 |
| 감 사 | 김 지 희 | 법무법인 바른 | 변 호 사 | - 現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- 現 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 -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|



충남연구원에는
충남의 미래가 있습니다.